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88호
- 나. 발 의 자 : 황철규 의원 등 30명
- 다. 발의일자 : 2025년 2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 II.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실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함(안 제8조)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를 규정함(안 제13조)

○ 학교폭력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2. 11. ~ 2. 15.(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황철규 의원 등 30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388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내실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정책 결정자에게 조언·설명·연구수행 등의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재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은 관련 법령<sup>1)</sup> 또는 교육부 정책을 기준으로 각 교육청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조건에 처해있는 여러 교육청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한다)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sup>2)</sup>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실적으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단편적인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총괄적인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날로 심각해지고 그 형태가 다양하게 진화해 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관리와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자문위원회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문위원회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 1)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안 제9조에서 제1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에

---

2)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해촉과 운영 등 자문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및 관련 절차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사안 처리 등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교육감에게 자문을 제공할 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향후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있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안 제9조는 학교폭력 관련 교사 및 공무원, 학생, 민간 전문 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폭력 사안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9조제2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 또는 평생진로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직제명<sup>3)</sup>을 고려했을 때 ‘평생진로국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의2(평생진로교육국)평생진로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에 의한 지원 및 가·피해학생 분리조치(안 제1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3조제1항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sup>4)</sup>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13조제1항은 피해자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더불어 학교장에게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 제13조(피해학생의 보호 지원)제1항에 학교장에게 피해자 지원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에 명시된 학교장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바, 동 조문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제2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 동의 없으면 가·피해학생을 서로 마주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에게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치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제5호<sup>5)</sup>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가·피해학생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외부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간혹 가·피해학생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외부기관이 있어 가·피해학생의 동선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는바,

동 조문은 가해학생 프로그램과 피해학생 심리치유 진행 중에도 가·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2차 피해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피해학생의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이 각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우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규정이 부재하고, 이처럼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분리 조치하도록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더욱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따른 피해자 분리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측면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sup>6)</sup>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분리조치하여야 하고, 분리기간 역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sup>7)</sup>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13조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안 제2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23조는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수업시수 및 업무를 경감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sup>8)</sup>에 따라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지원을 위해 수업시수 지원, 마음치유 연수, 법률지원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1. 피해학생이 반대이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5페이지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표-1]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지원 정책**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수업시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학교폭력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li> <li>- 목적: 수업시수 경감을 통해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li> <li>- 대상: 학교 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학교폭력책임교사 등)</li> <li>- 지원 범위: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당 3,625천원(25,000원×5시간×29주)</li> </ul>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법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교원안심공제</li> <li>- 목적: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률 지원</li> <li>- 내용: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 법률 자문 수시 지원</li> <li>- 방법: (소송비)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 (법률자문)교육지원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li> </ul>

○ 이러한 정부 및 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 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증가, 악성민원 증가, 교권침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2.13.).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	-------	----------------

#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233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